

군산시 공고 제2020 - 1592호

「군산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맞춰 조문 내용을 수정·보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 없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관리 규정 삭제(제29조)

- ☞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 법률 조항 삭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관리 등 조항' 삭제

○ 과태료 부과기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변경(제33조 별표6)

- ☞ 옥외광고물 관련 교육 미 이수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

### 3. 의견제출

군산시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TEL : 454-3612, FAX : 063-454-429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광고물계(063-454-3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조례안 : 붙임참고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p> <p>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li> <li>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li> <li>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li> </ol>	<p>&lt;삭제&gt;</p>

## [별표6]

##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p> <p>가) 면적 1㎡ 미만</p> <p>    - 0.5㎡ 미만</p> <p>    - 0.5㎡ 이상 0.8㎡ 미만</p> <p>    - 0.8㎡ 이상 1㎡ 미만</p> <p>나) 면적 1㎡ 이상 2㎡ 미만</p> <p>    - 1㎡ 이상 1.3㎡ 미만</p> <p>    - 1.3㎡ 이상 1.6㎡ 미만</p> <p>    - 1.6㎡ 이상 2㎡ 미만</p> <p>다) 면적 2㎡ 이상 3㎡ 미만</p> <p>    - 2㎡ 이상 2.3㎡ 미만</p> <p>    - 2.3㎡ 이상 2.6㎡ 미만</p> <p>    - 2.6㎡ 이상 3.0㎡ 미만</p> <p>라) 면적 3㎡</p> <p>    - 3㎡ 초과하는 면적 0.5㎡당</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면적 1㎡ 미만</p> <p>    - 0.5㎡ 미만</p> <p>    - 0.5㎡ 이상 0.8㎡ 미만</p> <p>    - 0.8㎡ 이상 1㎡ 미만</p> <p>나) 면적 1㎡ 이상 2㎡ 미만</p> <p>    - 1㎡ 이상 1.3㎡ 미만</p> <p>    - 1.3㎡ 이상 1.6㎡ 미만</p> <p>    - 1.6㎡ 이상 2㎡ 미만</p> <p>다) 면적 2㎡ 이상 3㎡ 미만</p> <p>    - 2㎡ 이상 2.3㎡ 미만</p>	<p>법 제20조제1항제1호</p>	<p>13만원</p> <p>22만원</p> <p>32만원</p> <p>42만원</p> <p>50만원</p> <p>64만원</p> <p>75만원</p> <p>100만원</p> <p>129만원</p> <p>130만원</p> <p>15만원을 더한 금액</p> <p>8만원</p> <p>12만원</p> <p>14만원</p> <p>25만원</p> <p>33만원</p> <p>49만원</p> <p>58만원</p>

- 2.3㎡ 이상 2.6㎡ 미만	67만원
- 2.6㎡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면적 3㎡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8만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 2㎡ 이상 3㎡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22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 6.1㎡ 이상 8.0㎡ 이하	58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 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 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군산시 공고 제2020 - 1611호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군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변경
-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안 제3조)
  -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
- 통합계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통합계정 재원과 용도 명시

- 재정안정화계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재정안정화계정 재원과 용도, 사용한도 명시
- 기금의 예수·예탁 및 용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1조)
  - 예수·예탁기간, 이자, 상환 등과 용자 기간, 원리금 상환 명시
- 기금의 운용심의(안 제12조)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 심의위원회의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대행 규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4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454-2316, FAX : 063-452-815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예산계  
    전화 063-454-23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군산시조례 제 호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군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수”란 다른 회계·기금 등에서 이차지급 등의 조건으로 자금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2. “예탁”이란 일반·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에서 자금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계정구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위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여유자금을 예탁한 각종 회계·기금의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운용한다.

-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기금운용 수익금
-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출연하지 않을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

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3.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 4.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 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⑤ 1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또는 긴급한 재난 및 재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예탁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회계·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해당 회계·기금운용관에게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 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예수일의 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회계·기금의 특성, 통합기금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회계·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예탁금의 상환규정) ① 각 회계·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탁한 자금을 상환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회계·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각 회계·기금운용관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

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통합기금의 용자) ① 통합기금을 용자하고자 하는 때에 시장은 용자받은 기관의 장과 용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용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기금 용자금 관리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용자기간) ① 시장은 기금을 용자 하는 경우, 용자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용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용자기간 만료일까지 용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용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용자약정에 의한다.

② 용자받은 기관이 용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연체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용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용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용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⑤ 용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시금고 영업일에 준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
- 2. 분임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 2. 기금출납원 : 예산계장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 12. 31.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1부터 별지 5까지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군산시 통합관리기금」과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③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④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⑤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⑥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⑦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참고**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신 설>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개 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시행일 : 2020. 9.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전문개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2020-18호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사용료 미반환 규정이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로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사용료 반환사유 예시 규정 (안 제9조)
  - 현행의 사용료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사유 예시 명시 규정으로 개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먹거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65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전화: 454-3042, FAX: 452-300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

전화 063-454-30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오납한 경우

4.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등을 취소한 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료 반환) <u>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p>1. · 2.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9조(사용료 반환) <u>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과오납한 경우</u></p> <p><u>4.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등을 취소한 때</u></p>

군산시 고시 제2020-115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변경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치	지정(변경)내용				지정(변경)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당초	변경		
오룡지구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897-3일원	붕괴 위험	나	15,887	9,067	◦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제외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도면 및 토지조서 1부

2020년 7월 13일

## 군 산 시 장



## ■ 토지조서(변경)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m <sup>2</sup> )	전체면적(m <sup>2</sup> )	비고
	계	52필지	9,067	9,866	
1	893-4	대	101	101	
2	896	대	142	142	
3	896-1	전	165	165	
4	896-2	대	234	234	
5	896-4	대	225	225	
6	896-7	대	366	366	
7	896-8	대	251	251	
8	896-9	대	132	132	
9	896-10	대	56	56	
10	896-11	도	426	426	
11	896-12	대	23	23	
12	896-13	대	50	50	
13	896-14	대	7	7	
14	896-27	대	40	40	
15	896-28	대	56	56	
16	896-29	대	36	36	
17	896-30	대	69	69	
18	896-31	대	188	188	
19	896-33	대	10	10	
20	896-39	전	60	60	
21	896-40	도	3	3	
22	896-41	대	259	259	
23	896-42	전	651	651	
24	896-43	대	169	169	
25	896-47	도	3	3	
26	896-57	대	662	662	
27	896-58	대	161	161	
28	896-59	대	163	163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m <sup>2</sup> )	전체면적(m <sup>2</sup> )	비고
29	896-62	대	2	2	
30	896-65	대	1	1	
31	897-1	전	331	331	
32	897-2	전	195	195	
33	897-3	전	198	198	
34	897-4	전	305	305	
35	897-5	전	20	20	
36	897-8	전	411	411	
37	897-9	전	299	299	
38	897-10	전	330	330	
39	897-11	전	330	330	
40	897-12	전	331	331	
41	897-13	전	251	251	
42	898-4	전	357	357	
43	898-5	전	235	235	
44	898-6	전	33	33	
45	898-15	대	132	132	
46	926-2	대	22	22	
47	926-3	전	134	933	
48	926-4	전	187	187	
49	926-6	대	114	114	
50	926-7	대	65	65	
51	927-11	대	54	54	
52	927-3	대	22	22	

## 군산시 고시 제2020 - 11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7.

## 군 산 시 장

##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20-0009호 (2020. 7. 14.)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미룡동)
  - 성명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③ 허가목적 : 해상풍력 터빈실증단지 설계를 위한 해상기상탑 설치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09번지 지선 공유수면
- ⑤ 면 적 : 900m<sup>2</sup>
- ⑥ 허가기간 : 2020. 7. 14. ~ 2025. 6. 30.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0-120호

군산 도시관리계획(지곡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04-250호(2004.09.17.)로 고시한 군산시 지곡동 158-1번지 일원 지곡동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0년 7월 31일

군 산 시 장

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지곡동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지곡동 158-1번지 일원	41,893	감) 78.2	41,814.8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변경사유
변경	5	군산시 지곡동 158-1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변경</li> <li>- 41,893.0m<sup>2</sup> → 41,814.8m<sup>2</sup> (감 78.2m<sup>2</sup>, 0.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분할에 따른 공부상 면적으로 정정(감 60.2m<sup>2</sup>)</li> <li>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폐지시설 각각부 제척(감 18.0m<sup>2</sup>)</li> </ul>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1,893	감) 78.2	41,814.8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1,893	감) 78.2	41,814.8	100.0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57	미리내 공원	어린이 공원	지곡동 156-5	1,825	증) 15	1,840	군산고210 (96.6.1)	지번 변경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7	미리내공원	○ 위치변경 - 지곡동 156-1일원 → 지곡동 156-5번지 ○ 면적변경 - 1,825m <sup>2</sup> → 1,840m <sup>2</sup> (증 15m <sup>2</sup> )	지적확정에 따른 지번 및 면적변경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조성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25	증) 15	1,840	-	-	-	
광 장	538	-	538	-	-	-	
조 경 시 설	15	-	15	-	-	-	
유 희 시 설	186	-	186	-	-	-	
운 동 시 설	20	-	20	-	-	-	
녹 지	1,066	증) 15	1,081	-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변경후	
-	-	41,893	감) 78.2	41,814.8	①	34,581	감) 64.2	1) 34,516.8	주택부지
					②	1,825	증) 15.0	2) 1,840	시설부지(공원)
					③	3,529	감) 118.2	3) 3,410.8	시설부지(도로)
					④	696	증) 187.9	4) 883.9	시설부지(도로)
					⑤	1,262	감) 89.7	5) 1,172.3	시설부지(도로)

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법 규정 (군산시 조례 등)
-	1-①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허용용도(령) - 공동주택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권장용도 : -	
		건폐율	○ 21% 이하	○ 60%이하(조례)
		용적률	○ 235% 이하	○ 250%이하(조례)
높 이	○ 공동주택 : 최고높이 15층 이하 ○ 부대복리시설 : 2층이하	○ 최고높이 15층 이하(령)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 군산 도시관리계획(지곡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계재 생략”

※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군산시 고시 제2020 - 123호

## 2019년 무녀2구항 어촌뉴딜300 사업계획 변경고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무녀2구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7조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 08. 03.

1. 사 업 명 : 2019년 무녀2구항 어촌뉴딜 300사업

2. 사업의 목적

어항정비 및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대상지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및 이용성을 향상시키며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및 소득증대 등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 14,960백만원(국비 10,472 지방비 4,488)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1) 사업의 내용

- 공동사업 : 방파제보강(60m연장), 어항시설정비, 어구보관 및 공동작업장 조성
- 특화사업 : 맞이마당 조성, 어울림마당 조성, 마을 안길 정비, 무녀 테마 정원 조성, 무녀 활성화센터 조성, 임시주차장 및 공원조성, 특산물 판매장 부지조성
- S/W사업 : 무녀2구 통합브랜드 개발, 홍보컨텐츠 개발 등, 교육, 지역협의체 운영

2) 사업의 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무녀2구항 일원(무녀2구항)

5. 사업예정기간 : 2020년 ~ 2021년(2년간)

6. 사업의 효과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여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 발전 실현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위탁시행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1	옥도면	무녀도리	산35-1	임	7,289.6	1,500.0	국(기획재정부)	무녀 테마정원조성
2	옥도면	무녀도리	산10-13	도	2,153.0	216.0	국(국토해양부)	특산물판매장 부지조성
3	옥도면	무녀도리	산10-8	도	2,835.0	359.0	국(국토해양부)	
4	옥도면	무녀도리	산10	임	854.0	876.0	군산시	
6	옥도면	무녀도리	산4	임	18,662.0	5,230.0	국(산림청)	임시주차장 및 공원조성
7	옥도면	무녀도리	산4-1	도	6,528.0	1,473.0	국(국토해양부)	
8	옥도면	무녀도리	산8-1	도	1,934.0	218.0	국(국토해양부)	

군산시 공고 제2020-1541호

#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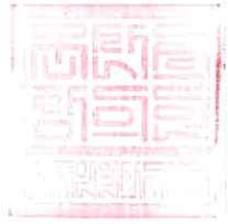
2020. 7. 15.

## 군 산 시 장

-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20. 7. 15.
-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20. 7. 15.
-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1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 조	군산시장의인 건축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건국경관과 민원서류 발급 인증기 교체	건 축 경관과

-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1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폐기사유	폐기부서
폐 기	군산시장의인 건축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건국경관과 민원서류 발급 인증기 교체	건 축 경관과

군산시 공고 2020 - 1559호

##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군산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및 개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7. 20.

군 산 시 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칭 :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
- 나.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900-40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 주택건설 : 고령자 복지주택 150호(전용 26㎡)
  - 복지시설 : 1~2층 연면적 1,500㎡

- 2. 사업시행자 :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 3.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2. 12.

### 4.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의견서 제출방법

- 가. 공람기간 : 2020. 7. 2. ~ 2020. 7. 17. (공고한 날부터 16일)
- 나. 공람장소 :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계(☎063-454-3713)
- 다. 의견서 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063-454-3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오룡동	893-1	대	184	184	임정*	군산시 오룡동893-21	군산농업협 동조합	군산시 조촌동774	근저당	협의 완료	
2	오룡동	893-2	대	149.0	149.0	최월*	군산시 오룡동893					사망 지분1/3
						군산시						
3	오룡동	893-3	대	112.0	112.0	군산시						
4	오룡동	893-5	전	99.0	99.0	군산시						
5	오룡동	893-6	대	169.0	169.0	군산시						
6	오룡동	893-7	대	86.0	86.0	군산시						
7	오룡동	893-8	대	94.0	94.0	군산시						
8	오룡동	893-9	대	49.0	49.0	군산시						
9	오룡동	893-12	대	169.0	169.0	군산시						
10	오룡동	893-14	대	122.0	122.0	군산시						
11	오룡동	893-16	대	108.0	108.0	군산시						
12	오룡동	893-19	대	122.0	122.0	군산시						
13	오룡동	893-33	대	2.0	2.0	군산시						
14	오룡동	893-34	대	30.0	30.0	군산시						
15	오룡동	893-36	전	102.0	102.0	임정*	군산시 오룡동893-21	군산농업협 동조합	군산시 조촌동 774	근저당	협의 완료	
16	오룡동	893-38	전	18.0	18.0	임정*	군산시 오룡동893-21	군산농업협 동조합	군산시 조촌동 774	근저당	협의 완료	
17	오룡동	893-39	전	55.0	55.0	임정*	군산시 오룡동893-21	군산농업협 동조합	군산시 조촌동 774	근저당	협의 완료	
18	오룡동	898-1	전	172.0	172.0	조혜*	군산시 오룡동900-18	함해*	대전 유성구 전민동 306-7	가압류	지분 28/17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군산시 월명로 282 동보빌딩 5층	가압류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가압류		
군산시												
19	오룡동	898-2	전	380.0	380.0	박금*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압록2로59,202동1402호				협의 완료	
						박유*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41길 3-3,302호(구암동)	전북은행	전주시덕진구 금암동669-2	근저당	협의 완료	
20	오룡동	898-3	전	26.0	26.0	군산시						
21	오룡동	898-8	대	337.0	337.0	군산시						
22	오룡동	898-9	대	192.0	192.0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23	오룡동	898-10	대	172.0	172.0	군산시					
24	오룡동	898-12	대	89.0	89.0	군산시					
25	오룡동	898-13	전	36.0	36.0	군산시					
26	오룡동	898-14	전	36.0	36.0	군산시					
27	오룡동	899	대	276.0	276.0	군산시					
28	오룡동	899-1	대	19.0	19.0	군산시					
29	오룡동	900-1	대	149.0	149.0	군산시					
30	오룡동	900-3	대	7.0	7.0	군산시					
31	오룡동	900-10	대	47.0	47.0	군산시					
32	오룡동	900-11	대	13.0	13.0	국(기재부)					
33	오룡동	900-16	대	36.0	36.0	군산시					
34	오룡동	900-17	대	126.0	126.0	군산시					
35	오룡동	900-36	대	40.0	40.0	군산시					
36	오룡동	900-37	대	60.0	60.0	군산시					
37	오룡동	900-38	대	5.0	5.0	군산시					
38	오룡동	900-39	대	11.0	11.0	군산시					
39	오룡동	900-40	대	245.0	245.0	군산시					
40	오룡동	900-41	대	2.0	2.0	군산시					
41	오룡동	900-49	대	40.0	40.0	김희*	군산시 오룡동900-25	군산원에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하포로29	가압류	
								삼성카드 주식회사	서울중구 을지로1가 87	가압류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814	가압류	
42	오룡동	900-50	대	54.0	54.0	윤규*	충청남도계룡시 엄사면 번영로47				행불 지분 32/244
						군산시					
43	오룡동	900-51	대	10.0	10.0	군산시					
44	오룡동	900-52	대	8.0	8.0	군산시					
45	오룡동	900-53	대	2.0	2.0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46	오룡동	900-54	대	69.0	69.0	군산시						
47	오룡동	900-55	대	31.0	31.0	군산시						
48	오룡동	900-56	대	75.0	75.0	군산시						
49	오룡동	900-57	대	29.0	29.0	군산시						
50	오룡동	900-58	대	15.0	15.0	군산시						
51	오룡동	900-59	대	7.0	7.0	군산시						
52	오룡동	900-60	대	17.0	17.0	군산시						
53	오룡동	900-61	도	51.0	51.0	윤규*	군산시 동흥남길9, 106동1402호					합의 추진 완료
						윤규*	군산시 칠성안4길 39,914호					합의 추진 완료
						윤금*	김제시 김제면 용지로608					합의 추진 완료
						윤규*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47					행 시 분 1/4
54	오룡동	900-62	대	21.0	21.0	군산시						
55	오룡동	900-63	대	27.0	27.0	이철*	부천시 남구 심곡동 655-20					연락두절
56	오룡동	900-64	대	22.0	22.0	군산시						
57	오룡동	900-66	대	67.0	67.0	군산시						
58	오룡동	900-67	도	10.0	10.0	윤규*	군산시 동흥남길9, 106동1402호					합의 추진 완료
						윤규*	군산시 칠성안4길 39,914호					합의 추진 완료
						윤금*	김제시 김제면 용지로608					합의 추진 완료
						윤규*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47					행 시 분 1/4
59	오룡동	900-70	대	48.0	48.0	군산시						
60	오룡동	900-71	대	104.0	104.0	군산시						
61	오룡동	900-72	대	34.0	34.0	군산시						
62	오룡동	900-73	대	19.0	19.0	군산시						
63	오룡동	900-76	대	10.0	10.0	군산시						
64	오룡동	900-77	대	30.0	30.0	군산시						
65	오룡동	900-78	대	79.0	79.0	군산시						
66	오룡동	900-80	대	21.0	21.0	군산시						
67	오룡동	900-81	대	43.0	43.0	군산시						
68	오룡동	900-82	대	39.0	39.0	군산시						
69	오룡동	900-83	대	23.0	23.0	송명*	군산시 경암동 664-7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70	오룡동	900-84	대	35.0	35.0	군산시					
71	오룡동	900-85	대	37.0	37.0	군산시					
72	오룡동	900-86	대	34.0	34.0	군산시					
73	오룡동	900-87	대	22.0	22.0	최창*	군산시 오룡동 900-27				
74	오룡동	900-88	대	23.0	23.0	김춘*	군산시 오룡동 900-31				협의 취득 완료
75	오룡동	900-89	대	85.0	85.0	군산시					
76	오룡동	900-90	대	52.0	52.0	군산시					
77	오룡동	900-91	대	24.0	24.0	하남*	군산시 오룡동900-20				사망
78	오룡동	900-92	대	20.0	20.0	군산시					
79	오룡동	900-93	대	53.0	53.0	군산시					
80	오룡동	900-94	도	9.0	9.0	군산시					
81	오룡동	900-95	대	8.0	8.0	군산시					
82	오룡동	900-96	대	14.0	14.0	군산시					
83	오룡동	900-97	대	11.0	11.0	군산시					
84	오룡동	900-100	대	1.0	1.0	군산시					
85	오룡동	900-103	도	144.0	144.0	군산시					
86	오룡동	900-109	대	55.0	55.0	군산시					
87	오룡동	900-112	대	85.0	85.0	군산시					
88	오룡동	900-113	대	61.0	61.0	군산시					
89	오룡동	900-114	대	3.0	3.0	군산시					
90	오룡동	900-116	대	1.0	1.0	군산시					
91	오룡동	900-117	대	6.0	6.0	군산시					
92	오룡동	900-118	대	6.0	6.0	군산시					
93	오룡동	900-119	대	9.0	9.0	군산시					
94	오룡동	900-120	대	28.0	28.0	군산시					
95	오룡동	900-121	대	17.0	17.0	군산시					
96	오룡동	900-122	대	34.0	34.0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97	오룡동	900-123	대	26.0	26.0	유철*	서울도봉구미아동135-8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독막길24	압류	지분 29/11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세무과)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89길13	압류	
						군산시					
98	오룡동	900-127	대	1.0	1.0	군산시					
99	오룡동	900-129	대	29.0	29.0	군산시					
100	오룡동	900-130	대	6.0	6.0	김희*	군산시 오룡동 900-10				사망
101	오룡동	900-131	대	105.0	105.0	군산시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사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오룡동	893-1	일반음식점 1층	철근콘크리트	103.24㎡	임정*	군산시 오룡동839-21	협의 취득 완료
			다가구주택 (2층, 4가구)	철근콘크리트	107.76㎡			
2	오룡동	893-36	컨테이너	강구조	1동 18㎡	임정*	군산시 오룡동839-21	협의 취득 완료
3	오룡동	900-91	가옥	조적조	26.88㎡	홍석*	군산시 선양윗길 3-30 (오룡동)	
4	오룡동	900-87	가옥	조적조	19㎡	최창*	군산시 선양윗길 3-20 (오룡동)	
5	오룡동	900-88	가옥	조적조	22.42㎡	소유자불명		
6	오룡동	900-83	가옥	조적조	18.24㎡	송명*	군산시 경암3길 22 (경 암동)	
7	오룡동	900-80	창고	목조	11.4㎡	소유자불명		
			창고	강관	5.4㎡			
8	오룡동	900-50	가옥	조적조	30.78㎡	군산시		

### 의견제출서

의견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제출 내용	① 제목 <b>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b>	
	대상 (토지, 물건)	대상 (토지, 물건) 주소 : 군산시 오룡동                      번지
	의견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020/2021년도 어업면허(한정) 처분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20-1566호

2020/2021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 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한정)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7. 21.

## 군 산 시 장

### ○ 어업면허 처분 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면적 (ha)	어업권자	면허기간	면허 처분일	어장위치	비고
제5322호	마을어업	20	신시도 여촌계장	2020.07.21. ~ 2025.07.20.	2020. 07.2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역	한정
제5325호	마을어업	17	신시도 여촌계장	2020.07.21. ~ 2025.07.20.	2020. 07.2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역	한정
제5326호	마을어업	39	신시도 여촌계장	2020.07.21. ~ 2025.07.20.	2020. 07.2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역	한정
제5327호	마을어업	38	신시도 여촌계장	2020.07.21. ~ 2025.07.20.	2020. 07.21.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역	한정

# 2020/2021년도 어업면허(한정) 처분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20-1574호

2020/2021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 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한정)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7. 22.

## 군 산 시 장

### ○ 어업면허 처분 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면적 (ha)	어업권자	면허기간	면허 처분일	어장위치	비고
제5328호	마을어업	10	선유도 어촌계장	2020.07.22. ~ 2025.07.21.	2020. 07.2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인근 해역	한정
제5329호	마을어업	17	선유도 어촌계장	2020.07.22. ~ 2025.07.21.	2020. 07.2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인근 해역	한정
제5330호	마을어업	44	선유도 어촌계장	2020.07.22. ~ 2025.07.21.	2020. 07.2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인근 해역	한정
제5331호	마을어업	18	선유도 어촌계장	2020.07.22. ~ 2025.07.21.	2020. 07.22.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인근 해역	한정

# 2020/2021년도 어업면허(한정) 처분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20-1578호

2020/2021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 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한정)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7. 23.

## 군 산 시 장

### ○ 어업면허 처분 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면적 (ha)	어업권자	면허기간	면허 처분일	어장위치	비고
제5332호	마을어업	4	무녀도 어촌계장	2020.07.23. ~ 2025.07.22.	2020. 07.23.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인근 해역	한정
제5757호	패류 양식어업	30	방축도 어촌계장	2020.07.23. ~ 2025.07.22.	2020. 07.23.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인근 해역	한정
제5758호	패류 양식어업	30	방축도 어촌계장	2020.07.23. ~ 2025.07.22.	2020. 07.23.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 인근 해역	한정

# 2020/2021년도 어업면허(한정) 처분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20-1608호

2020/2021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 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한정)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7. 30.

## 군 산 시 장

### ○ 어업면허 처분 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면적 (ha)	어업권자	면허기간	면허 처분일	어장위치	비고
제5333호	마을어업	5	장자도 어촌계장	2020.07.30. ~ 2025.07.29.	2020. 07.30.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 인근 해역	한정
제5334호	마을어업	50	비안도 어촌계장	2020.07.30. ~ 2025.07.29.	2020. 07.30.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인근 해역	한정